

충청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문)

2019. 09



충청북도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물질소비의 증가는 자원의 고갈을 넘어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야기.
- 전 세계적으로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정책 추진 중
-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고, 좁은 국토 면적으로 추가적인 매립지 건설이 어려워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시급.
- 경제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제정(‘16.5 공포, ‘18.1 시행)
- 동 법에 따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을 담은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18~‘27) 수립 .
- 국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투자계획을 포함한 충청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18~‘22) 수립 필요.

1.2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제시 및 충청도내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를 통한 자원순환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고,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충청북도자원순환시행계획」 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예측·분석, 영향의 저감 대책마련 등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건전성, 지속가능성과 부합성, 일관성 있는 검토를 전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 표 1.2 - 1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 표 1.2 - 2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거.폐기물·분뇨·가축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때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별표 2]

1.5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19년 05월 : 충청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19년 06월 19일 ~ 07월 05일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개최
- 2019년 07월 25일 ~ 08월 08일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19년 09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및 공고·공람(예정)
- 2019년 10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작성 및 협의요청(예정)

1.6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충청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나.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충청북도 전지역(3개시, 8개군)

(2)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8~2022년(5년간)
- 기준연도 : 2016년, 목표연도 : 2022년
- 계획목표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현황제시
 - 2018~2027년 10년간 목표설정
 - 2018~2022년 실천목표 제시

다. 계획시행자

- 충청북도

라. 승인기관

- 환경부

마. 계획의 세부내용

(1) 기존 자원순환 관련 계획의 성과평가

- 기존 기간(2008년~2017년)동안 자원순환 정책(폐기물관리 정책을 포함)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 성과평가는 자원순환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와 부문별 세부평가를 병행.

(2) 지역 내·외 및 국제적 환경변화와 전망 및 관련계획의 검토

자원순환 정책방향(국외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OECD, EU, 독일, 일본 관련계획 검토
자원순환 관련 정책검토	◦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년~2027년)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년~2035년)
	◦ 충청북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2012년~2021년)
	◦ 충청북도 환경보전계획(2016년~2025년)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계획(2018년~2022년)

(3)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여건변화와 전망

- 최근 10년간(2008~2017) 충청북도 폐기물(생활,사업장,건설,지정폐기물 등) 발생량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의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
 - 폐기물발생량은 2018년 18,384.2톤/일에서 2027년 24,579.0톤/일로 33.7%증가 예상.

(4) 계획의 목표설정

(가) 자원순환의 목표 수립

구분		목표	비고
원단위 발생량	국내 총생산당폐기물발생량	113.7→90.9톤/일	▼ 20.0%
	인구당 생활폐기물발생량	1.30→1.06kg	▼ 19.0%
순환이용률		52.3→61.0%	▲ 8.7%
최종처분율		22.1→7.3%	▼ 14.8%

(나) 자원순환 방향 설정

자원순환 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량-재사용-재활용-에너지재활용-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소비 단계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제품의 재사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의 근원적 발생 저감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설정 - 에너지재활용 위주가 아닌 물질 재활용 중심의 재활용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이행평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자원순환 추진실적 보고 철저, 잔재물 배출계수 등 지속적으로 개선 및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 효율개선 및 재활용 기반 확충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소각시설 현대화 등 처리 효율 향상, 선별·재활용시설 개선 및 확충을 통한 잔재물 발생 - 최소화·재활용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책임의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적 생활양식 정착 -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 추진

(5)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 4개 분야 46개 세부추진과제 도출(생산단계 2, 소비단계 12, 관리단계 26, 재생단계 6)

구분	세부과제	분야	주체
생산			
업종별 자원생산성 제고	◦ (국)순환자원 인정기업 지속 확대	사업장	1
폐기물 원청감량 촉진	◦ (국)사업장 성과관리 제도 단계적 참여 확대	사업장	1
소비			
생활속 폐기물 발생 억제	◦ (국)대체가능한 1회용품 사용 제로웨이스트 확대 (공공부문에서 민간위탁시설로 확대)	생활	1
	◦ (국)불필요한 과대포장 근절	생활	1
	◦ (국)시군 자원순환성과관리제 목표 설정 및 관리	생활	2
	◦ (국)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단계적 현실화 추진	생활	3
	◦ (국)RFID보급 확대 및 홍보교육 추진	생활	1
	◦ (타)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생활	1
	◦ (타)재활용가능 폐기물 무인회수기 설치	생활	1
자원효율적 친환경 소비 촉진	◦ (국)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생활	2
	◦ (국)재활용나눔장터 활성화	생활	1
자원순환 문화 조성·확산	◦ (국)대형마트, 프렌차이즈점 등 자발적 협약 이행 상황 모니터링 강화	생활	1
	◦ (국)충북도 농촌지역 자원순환마을 확대	생활	1
	◦ (타)재활용 인식제고 및 시민참여 확대 (폐자원 재활용 공모전 개최)	생활/사업장	1
관리			
배출·수거·선별체계 혁신	◦ (국)재활용도움센터 시범설치	생활	1
	◦ (국)농촌 영농집하장 확충 시설개선	생활	2
	◦ (충)단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생활	1
	◦ (충)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생활	1
	◦ (충)옥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생활	1
	◦ (충)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생활	1
	◦ (충)진천, 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	생활	1
	◦ (충)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사업	생활	1
	◦ (충)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설사업	생활	1
	◦ (충)충주시 재활용선별시설 개선사업	생활	1
	◦ (충)충주시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사업	생활	1
	◦ (충)충주시 자원순환센터 설치사업	생활	1
	◦ (타)시군 재활용품 수거운반방식 효율적 전환, 폐비닐 별도 요일 분리배출 시범시행(선별률 최대 70%증대)	생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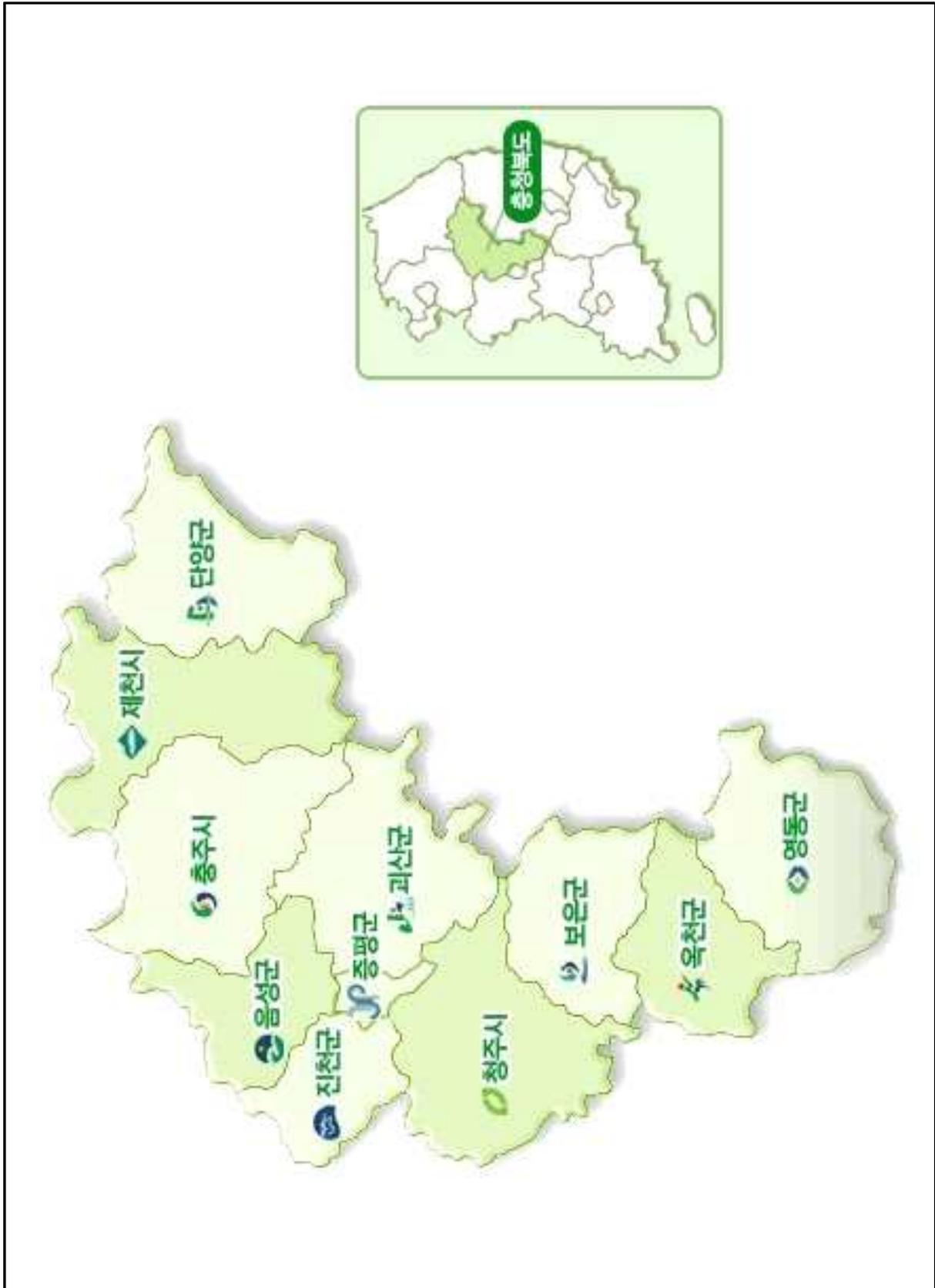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구 분	세부과제	분야	주체
관리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 (총)단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생활	1
	◦ (총)단양군 생활폐기물 2단계 매립시설 증설사업	생활	1
	◦ (총)보은군 용암매립시설 증설사업	생활	1
	◦ (총)증평군 연탄리 비위생 매립시설 정비사업	생활	1
	◦ (총)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	생활	1
	◦ (총)괴산, 증평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생활	1
	◦ (총)진천, 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	생활	1
	◦ (총)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생활	1
	◦ (총)청주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생활	1
	◦ (총)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장 증설사업	생활	1
	◦ (타)자원순환기본조례 제정	생활/사업장	2
◦ (타)농업부산물의 불법처리 예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파쇄기 지원	생활	1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 (국)시군별 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이행평가	생활	1
재생			
물질재활용 중심의 체계 개선	◦ (국)(타)공공부문 순환골재 사용 확대	사업장	1
	◦ (국)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생활	1
	◦ (타)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상하반기 도 와 시·군 합동점검 실시)	사업장	1
	◦ (타)사업장폐기물 관련 교육(올바로시스템 사용법,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사업장	1
	◦ (타)폐전자제품 회수 리사이클 센터 건립	생활	2
Re&Up 사이클링 문화 활성화	◦ (국)(타)권역별 공공시설 활용 Re&Up 사이클링 플라자 조성(서울 새활용플라자 사례 참고)	생활/사업장	1

주1) (국)국가계획 사업, (타)타지자체 모범사업, (총)충청북도 사업
 2) 1-충청북도 및 시·군 함께(공동), 2-충청북도, 3-시·군

(6)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

구 분	사업명	사업량	비 고
매립시설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매립용량(110만㎡) 부지면적(224,354㎡)	
	단양군 생활폐기물 2단계 매립시설 증설사업	252,000㎡	
	보은군 용암매립시설 증설사업	60,000㎡/증설	
	증평군 연탄리 비위생 매립시설 정비사업	매립면적(9,194㎡) 매립용량(54,650㎡)	
소각시설	제천시 소각시설	140톤/일	
	단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40톤/일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30톤/일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	30톤/일	
	괴산·증평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40톤/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	50톤/일	
	청주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100톤/일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장 증설사업 (소각여열회수시설 포함)	70톤/일	
생활자원 회수센터	단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10톤/일 (재활용선별시설)	
	옥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10톤/일 (기계적처리시설)	
	괴산·증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5톤/일 (재활용처리시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	40톤/일 (재활용선별시설)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사업	50톤/일 70톤/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5톤/일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40톤/일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설사업	200톤/일	



(그림 1 - 1) 계획지역 위치도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개요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결정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2.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목적

- 근거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5호, 동법 제11조, 시행령 제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② 토지이용구상안, ③ 대안, ④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⑤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2.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근거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4조
 -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

2.1.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근거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함.

-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위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서면 심의
 - ①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 ③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근거법률 : 시행령 제9조
 - 심의기간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간은 30일이며,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2.1.5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기능 및 역할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함.
 - ① 법 제6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평가 대상지역
 - ② 법 제11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당 사업에 적용할 평가항목·범위
 - ③ 제2호에 따라 선정된 평가항목별 조사·예측·평가의 방법
 - ④ 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계획
 - ⑤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 해당 여부
 - ⑥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식평가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과 협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요청한 양 의견 간 내용 조정에 관한 사항
 - ⑦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위원장이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2.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토지이용구상안
 -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심의기간 : 2019. 06. 19 ~ 07. 05 (13일간)
- 심의위원 : 협의기관(환경부), 계획수립기관(충청북도), 주민대표 등 포함 총 9명

< 표 2.2 - 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기 타
위원장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정 ○ ○	
위 원	충청북도 자원순환팀	자원순환팀장	강 ○ ○	
위 원	충청북도 자원순환팀	자 원 순 환 팀	권 ○ ○	
위 원	환 경 부	행 정 사 무 관	홍 ○ ○	
위 원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주 무 관	남 ○ ○	
위 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 구 위 원	이 ○ ○	
위 원	한 국 교 통 대 학 교	교 수	연 ○ ○	
위 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 무 처 장	이 ○ ○	
위 원	청주시이·통장협의회	회 장	이 ○ ○	

2.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구분	심의의견	조치결과	비고
■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장 정○○ 위원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계획의 범위가 충청북도 전역으로 지역특성, 환경적인 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충북의 지역특성 및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을 고려토록 하겠음.	반영
	2. 토지이용 구성안 ◦ 의견없음	-	
	3. 대안 ◦ 자원순환시행계획은 자원순환 정책 및 정부정책의 기초에 맞는 정확한 목표 설정과 계량화된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 제1차자원순환기본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등과 같은 폐기물 관련계획들과 충청북도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을 설정토록 하겠음.	반영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폐기물 관련 계획들과 연계성, 일관성, 적정성, 지속성 등을 검토하여야 함.	◦ 본 계획은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계획의 연계성·일관성은 상위계획과의 일관성으로 다루며,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은 기존의 입지의 타당성에서 평가하였음.	반영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되어야 함.	◦ 본 계획에 대하여 충북도청 홈페이지 및 E-ASS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초안보고서는 지역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겠음.	반영
	6. 기타 ◦ 자원순환정책의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필요	◦ 충청북도, 시·군, 지역전문가, 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자원순환정책의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지향하겠음	반영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구분	심의의견	조치결과	비고
<p>■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장 강○○ 위원</p>			
<p>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확대·설정하고 설정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야 함</p>	<p>◦ 충청북도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설정사유를 명기하였음.</p>	반영
	<p>2. 토지이용 구성안 ◦ 의견없음</p>	-	
	<p>3. 대안 ◦ 의견없음</p>	-	반영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적정성·지속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 계획과 관련이 있는 국제 환경동향·협약·규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p>	<p>◦ 본 계획은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계획의 연계성·일관성은 상위계획과의 일관성으로 다루며,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은 기존의 입지의 타당성에서 평가토록 함.</p>	반영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수렴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진행하여야 함.</p>	<p>◦ 본 계획에 대하여 충북도청 홈페이지 및 EIASS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계획을 진행하겠음.</p>	반영
	<p>6. 기타 ◦ 자원순환시행계획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등에 대한 교육 필요</p>	<p>◦ 자원순환시행계획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하도록 하겠음</p>	반영
<p>■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장 권○○ 위원</p>			
<p>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의견없음</p>	-	반영
	<p>2. 토지이용 구성안 ◦ 관련계획들과 연계성, 일관성, 적정성, 지속성 등을 검토</p>	<p>◦ 본 계획은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계획의 연계성·일관성은 상위계획과의 일관성으로 다루며,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은 기존의 입지의 타당성에서 평가토록 함.</p>	반영

구분	심의의견	조치결과	비고
<p>■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장 권○○ 위원</p>			
<p>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3.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대안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을 대안으로 선정하였음. 	반영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기본법상 강조되는 평가 항목이 무엇인지를 설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기본법을 토대로 중점 평가항목 및 일반평가항목을 설정 하도록 하겠음. 	반영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는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본 계획에 대하여 충북도청 홈페이지 및 EIASS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주민 의견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시행 하겠음. 	반영
	<p>6.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	-
<p>■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홍○○ 위원</p>			
<p>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협의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협의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겠음. 	반영
<p>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시설 설치 또는 기존시설 보수시 설정하는 평가항목 범위가 관할구역 (충청북도)경계를 넘어 인접 시·도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 범위까지 확대하여 대상 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보수시 평가항목 범위가 충청북도 경계를 넘어갈 경우 해당지역 범위까지 대상지역을 설정하겠음. 	반영
	<p>2. 토지이용 구성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p>3.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은 한강·금강수계에 해당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특성상 오염 유발 물질·민원 등에 취약할수 있으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에 ‘수리·수문’, ‘악취’ 및 ‘위생·공중보건’을 포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단계는 계획단계이며, 수리 수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으며, 악취 및 위생공중보건은 사업의 특성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항목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였음. 	반영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구분	심의의견	조치결과	비고
<p>■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홍○○ 위원</p>			
<p>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역 사회에 미치는 환경·사회적 영향이 큼 - 대기, 악취 등의 영향 권역을 보다 넓게 설정하고, 폭 넓은 대상과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기관:금강유역환경청)'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은 계획단계이며,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대기,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할 경우, 폭 넓은 대상과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음. 	반영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므로,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함이 바람직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단서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시·군·구 설명회 개최는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명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서 초안(요약서)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겠음. 	반영
	<p>6.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실시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해당시 협의회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를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실시계획시 실시하는 건강영향평가 실시대상여부에 해당되지 않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지침(18.9.환경부)'을 준수하여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준수하여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작성하겠음. 	반영
<p>■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남○○ 위원</p>			
<p>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토지이용구성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시설계획은 1:3,000~1:25,000도에 구상안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단계는 계획단계이며, 추후 계획시행시 구체적 입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1:3,000~25,000도에 구상안을 제시하겠음. 	반영
	<p>2.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설정은 제시한 계획비교, 수단·방법 외에도 시기·순서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최종 선정된 대안에 대한 선정사유를 명확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설정은 제시한 계획비교, 수단·방법 외에도 시기·순서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최종 선정된 대안에 대한 선정사유를 제시하였음. 	반영

구분	심의의견	조치결과	비고
<p>■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남○○ 위원</p>			
<p>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 (계획비교)Action/No Action외에도 이전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계획 내용을 유지할 경우와 금회 계획을 적용할 경우를 대안으로 선정</p>	<p>-(계획비교)이전계획을 유지할 경우와 금회계획을 적용할 경우를 대안으로 설정하여 비교·검토하였음.</p>	<p>반영</p>
	<p>- (계획비교)인구증가,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율, 에너지회수율 등에 대하여 다수의 목표치를 대안으로 설정</p>	<p>-기존의 총괄지표 및 핵심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목표치 비교·검토가 아닌 이전계획과 금회계획의 세부계획 비교·검토를 통한 대안을 설정하였음.</p>	
	<p>- (수단·방법)소각, 매립, 재활용율에 따라 대기질, 수질 및 온실가스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각각의 비율(목표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 정도를 비교·검토</p>	<p>-(수단·방법)소각,매립,재활용 비율이 목표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영향예측을 평가하겠음.</p>	
	<p>- (시기·순서)중점과제에 대하여 시급성, 실효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을 설정</p>	<p>-(시기·순서)추진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하여 효율성, 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겠음.</p>	
	<p>4. 대상지역, 평가 항목·범위·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 ◦ 별도 의견 없음</p>	-	-
<p>■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위원</p>			
<p>총괄의견</p>	<p>◦ 금번 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 연차별 시기·순서 총괄(57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p>	<p>◦ 연차별 시기·순서 총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p>	<p>반영</p>
	<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할 경우 연차별 폐기물 증가율 및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p>	<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연차별 폐기물 증가율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였음.</p>	<p>반영</p>
<p>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의견없음</p>	-	-
	<p>2. 대안 ◦ 의견없음</p>	-	-
	<p>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가.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 금회 제시된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11쪽)은 구체적인 내용(개선방안, 목표, 미달성시 대책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되어야 하며 목표달성에 영향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함.</p>	<p>◦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초안보고서에 제시하고, 목표달성에 대한 영향여부도 명확히 하였음.</p>	<p>반영</p>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구분	심의의견	조치결과	비고
<p>■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위원</p>			
<p>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지정폐기물)발생량을 직접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함.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제시된 폐기물 발생량은 발생량 집계액의 신뢰성 및 정확성이 미흡하므로 개별 산업단지의 폐기물 발생량을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자체 및 올바로 시스템상 폐기물 집계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계는 계획단계로, 추후 실시시설계 개별 산업단지의 폐기물발생량을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자체 및 올바로 시스템상 폐기물 집계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음. 	<p>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계는 계획단계임, 추후 실시시설계 단계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올바로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계는 계획단계임, 추후 실시시설계단계시 올바로시스템 등록여부를 확인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중 올바로시스템 미등록 업체일 경우 폐기물관리대장 및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확인 등을 통한 폐기물 발생량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계는 계획단계임, 추후 실시시설계단계시 폐기물관리대장 및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확인 등을 통한 폐기물발생량을 제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해당시설의 처리물질별 발생량, 설계용량 및 실제 처리량을 제시하고 추가 시설확충 필요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초시설의 처리물질별 발생량, 설계용량 및 실제처리량을 제시하고 추가 시설확충 필요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하겠음. 	<p>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충청북도내 소각시설의 처리 가능 용량은 가연성폐기물 발생량 대비 상당부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시설 확충여부 또는 타지자체 연계처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대상지역 설정에서 '금회 수립되는 시행계획에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규설치 계획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살펴볼 경우 추가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계는 계획단계임. 추후구체적인 계획수립후 실시시설 단계시 충청북도내 소각시설의 추가시설 확충여부, 타지자체 연계처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제시하겠음 	<p>추후 반영</p>
	<p>나.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영향예측 계획 등의 범위·방법 선정 및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자체의 폐기물 발생량 현황조사 및 처리방식 조사·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수립되는 충청북도의 폐기물발생량 현황 및 처리방식을 제시하였음. 	<p>반영</p>

구분	심의의견	조치결과	비고
<p>■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위원</p>			
<p>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처리방식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시설용량 확인 - 자자체내 폐기물적정처리여부 확인 - 자자체내 폐기물 적정처리가 불가할 경우 연계처리 방안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 - 자원순환이용률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필요시설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방식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확인·제시하였음. ○ 자자체내 폐기물적정처리여부를 확인하였음. ○ 자자체내 폐기물적정처리가 불가할 경우 연계처리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음. ○ 자원순환이용률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음 ○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필요시설 파악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내 입주업체를 상대로 재활용 증진 폐기물 종류 분석 및 해당 폐기물 종류의 재활용시설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계획단계임, 추후 시설계시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내 입주업체를 상대로 폐기물종류 분석 및 해당폐기물 종류의 재활용시설 현황조사를 제시하였음 	추후 반영
	<p>4.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가.공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 마을회관등 주민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곳에 본 사업의 목적, 추진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설명 등 계획수립 전반에 대한 내용을 주민이 충분히 이해·인지할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된 홍보물을 20일 이상 부착하여 사업지구 인근 모든 주민에게 이를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계획단계이며, 본 계획에 대하여 충북도청 홈페이지 및 EIASS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계획을 진행하겠음. 	반영
	<p>나.공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과학용어가 사용된 문서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 인포그래프(그림, 표 등)을 최대한 활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요약본을 별도 비치하는 방안 검토 -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악취, 비산먼지, 폐기물 운반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계획단계이며, 본 계획에 대하여 충북도청 홈페이지 및 EIASS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계획을 진행하겠음.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따른 실시계시 민원이 발생하는 악취, 비산먼지, 폐기물 운반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겠음. 	반영 추후 반영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구분	심의의견	조치결과	비고
<p>■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위원</p>			
<p>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다.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일정(일시 및 장소)은 가급적 주민참여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개최 일정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는 가급적 주민참여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개최일정을 수립하겠음. 	반영
	<p>5.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	-
<p>■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 위원</p>			
<p>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량-재사용-재활용-에너지재활용-안전처리”라는 기본방향은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생 최소화. 최대한 재사용/재활용, 최소한 매립 소각”이라는 내용을 정책추진 방향에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 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제시 및 충북도내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를 통한 자원순환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고,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충청북도자원순환시행계획」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예측·분석, 영향의 저감 대책마련 등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건전성, 지속가능성과 부합성, 일관성 있는 검토를 전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준비서 9쪽의 폐기물발생량 예측은 전반적인 인구감소와 폐기물 발생 억제정책은 반영되지 않은 예측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충청북도의 강력한 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을 반영하여 폐기물 발생량 예측을 다시해야 함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p>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2. 토지이용 구성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가장 환경 부하가 적고 주민민원 발생이 적은 지역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적인 계획 수립후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는 환경부하가 적고 주민민원 발생이 적은 지역을 선정하겠음. 	추후 반영
	<p>3.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으로 악취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가항목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 항목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으로 위생공중보건 영향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가항목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공중보건 항목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였음. 	

구분	심의의견	조치결과	비고
<p>■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 위원</p>			
<p>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처리시설이 한남금북정맥 등 주요 산림축을 훼손할수 있기 때문에 입지의 타당성 검토항목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형지질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처리시설이 경관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의 타당성 검토항목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p>6.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폐기물 처리가 지자체 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현재 많은 부분 민간에서 대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다시 지자체 업무로 편입하는 방안 포함하여 계획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은 국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임. 	추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발가능성이 있는 쓰레기 수거 대란 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의 재활용선별장 확대 및 수집 운반업체 지자체 운영 방안도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제시 및 충북도내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를 통한 자원순환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는 계획임. 	추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소비 교육이 성인들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특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단계는 기본계획 단계이며, 사업대상자 특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음. 	추후 반영	
<p>■ 한국교통대학교 연○○ 위원</p>			
<p>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서 작성시 각각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 언급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도청 홈페이지 및 EIASS에 내용게시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각 지자체와 주민의견 제출시 반영된 내용을 보고서에 언급하겠음. 	반영
<p>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의 범위가 충북 전역이므로 시·군별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의 지리적 특성 및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역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을 고려토록 하겠음. 	반영
	<p>2. 토지이용 구성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없음 	-	-

구분	심의의견	조치결과	비고
<p>■ 한국교통대학교 연○○ 위원</p>			
<p>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3. 대안 ◦ 대안설정은 최종선정한 대안에 대한 선정사유를 명확히 제시</p>	<p>◦ 최종선정한 대안에 대한 선정 사유를 제시하였음.</p>	<p>반영</p>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폐기물 관련 계획들과 연계성, 일관성, 적정성, 지속성, 목표의 충족성 등을 검토</p>	<p>◦ 본 계획은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계획의 연계성·일관성은 상위계획과의 일관성으로 다루며,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은 기존의 입지의 타당성에서 평가 하였음.</p>	<p>반영</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계획수립시 주민의견 반영</p>	<p>◦ 본 계획에 대하여 충북도청 홈페이지 및 EIAASS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음.</p>	<p>반영</p>
	<p>6. 기타 ◦ 기존 자원순환 관련계획 부분별 세부평가 내용을 본 보고서에 기재하였으면 함</p>	<p>◦ 본 계획은 기본계획 단계이며, 세부평가내용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실시계획시, 보고서에 기재하겠음.</p>	<p>추후 반영</p>

2.3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2.3.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평가준비서 심의내용을 공개하였음.
- 공개기간 : 2019. 07. 25 ~ 2019. 08. 08(15일)

충청북도 공고 제2019- 932호

충청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충청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공개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5일
충청북도지사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충청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공간적범위 : 충청북도 전지역(3개시, 8개군)
- 시간적범위 : 2018~2022년(5년간)
- 시행자 : 충청북도

2. 공개개요

- 공개기간 : 2019. 07. 25 ~ 08. 08(15일간)
- 공개방법 : 충청북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게재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1]

3.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 제출방법
 - 1) [붙임 2] 서식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 제출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환경정책과(043-220-4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고시/공고 조회
목록

고시/공고 번호	2019-932	구분	공고
담당자	안경진	전화번호	043-220-4044
담당부서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제목	충청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내 용

충청북도 공고 제2019- 932호

충청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충청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공개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5일

충청북도지사

게재 일자	2019-07-25
첨부파일	공고문.hwp 주민의견 제출서(양식).hwp 자원순환시행계획(평가항목결정내용공개).pdf

담당부서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담당자(전화번호)
안경진(043-220-4044)

충청북도 홈페이지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

* 사업명	충청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사업자	충청북도
* 협의기관	환경부
* 승인기관	환경부
결정내용	
* 결정내용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문(충청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pdf • 주민의견 제출서(양식).pdf • 충청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항목결정내용공개).pdf

결정내용공개
주민의견수렴

* 공고일	2019.07.25
* 공람기간	2019.07.25~2019.08.08
* 의견제출기간	2019.07.25~2019.08.08
부서명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2.3.2 주민의견 수렴

가.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에 따른 주민의견

- 주민의견 없음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 항목별로 구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다.

< 표 3.1 - 1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사유	평가대상지역
1) 계획의 적정성				
국가환경정책			○ 계획수립에 따른 국가 환경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충청북도 전역
국제 환경 동향·협약·규범			○ 계획수립에 따른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등 각종 환경 협약등에 관한 사항과의 부합성 검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본 계획의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자원순환기본법 등의 관련 계획 목표와의 부합성 검토	
2)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본 계획으로 인하여 동·식물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충청북도 전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본 계획으로 인해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및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 질	○ 본 계획시 주변수계의 직·간접적 영향지역	
생활환경안정성	환경기준부합성	기 상	○ 기상현황파악	충청북도 전역
		대 기 질	○ 계획시행으로 인해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해 차량이동 및 운영에 따른 대기영향 예상지역	
		온실가스	○ 계획시행으로 인해 투입장비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해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우려지역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사유	평가대상지역
생활환경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해 투입장비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해 운행차량에 따른 소음·진동이 예상되는 지역 	충청북도 전역
		토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해 장비가동·폐유저장소 설치등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해 사업시행에 따른 토양오염우려지역 	
		약 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약취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폐수, 폐기물을 연계처리가능 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 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사회·경제 환경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해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충청북도 전역
	인구 및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 시 인구 및 주거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 시 산업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위생·공중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시 사업시행으로 위생·공중보건등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3.2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측·평가 및 관련자료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함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사용한 예측·평가방법 및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 표 3.2 - 1 > 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평가방법 및 관련자료

평가항목		평가범위	예측방법	
계획의 적정성	국가환경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환경계획 및 시책과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여부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 ◦ 조사범위 : 충청북도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 관련부처(환경부)계획과의 연계성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충청북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상위 행정계획 및 타 행정 계획간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조사범위 : 충청북도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현황(식생현황,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 ◦ 조사범위 : 충청북도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자료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 조사범위 : 충청북도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자료 -지형의 변화, 토지 및 사면의 안정성 등을 예측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조사범위 : 충청북도 	-기존자료 및 문헌자료 조사 -문헌조사를 통한 경관영향 검토 -자연의 훼손정도, 조망의 변화 예측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류수계에 대한 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 - 계획대상지 주변의 오수처리 현황 ◦ 조사범위 : 충청북도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수용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수질오염 총량 관리기술지침에 따른 발생 오·폐수 부하량 산정

(표 계속) 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평가방법 및 관련자료

평가항목		평가범위	예측방법		
입지의 생활환경 안정성 타당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강수 일수, 풍향 등 기상현황 ◦ 조사범위 :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내 기상청의 10년간 (2008~2017) 기상자료 이용 -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이용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대기 오염도,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한 배출량 산정 ◦ 조사범위 :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자료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대기 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시행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온실가스 발생상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 조사범위 :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실시 - 계획시행에 따른 고정, 이동배출원 등의 온실가스 발생 및 녹지 공간에 의한 온실가스 감소량 발생 예측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계획지역의 토양오염 조사 ◦ 조사범위 :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실시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토양 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시행 및 운영시 토양에 미치는 영향 예측 	
		악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계획지역의 악취 조사 ◦ 조사범위 :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자료 - 계획시행이 악취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소음의 상황 및 주요발생원 조사 ◦ 조사범위 :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자료 - 계획시행시 소음·진동이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소음·진동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예측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 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현황 ◦ 조사범위 :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폐기물, 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 ◦ 조사범위 :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 - 폐기물발생원단위 등을 통한 발생량 분석 		
	사회·경제 환경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토지이용 현황 ◦ 조사범위 :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분석
			인구·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인구 및 주택현황 ◦ 조사범위 :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산업 및 농업현황 ◦ 조사범위 :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 	
위생·공중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위생·공중보건 현황 ◦ 조사범위 :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 	



(그림 3.2 - 1) 평가대상지역 범위 설정도

제4장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4.1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평가항목		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계획시행시 토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확산으로 인하여 주변식생의 생육 및 생산력 감소 예상
	지형 및 생태축보전	지형·지질	◦ 계획시행시 절성토에 의한 토공발생 ◦ 계획시행시 토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발생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계획시행시 절·성토 등으로 지형의 변화 및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자연경관변화가 예상됨.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계획시행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토사유출 및 비점오염원 증가로 일시적인 수질오염물질 배출증가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 합 성	대기질	◦ 계획시행시 비산먼지 및 공사장비에 의한 배기가스 등 대기 오염물질 발생
		온실가스	◦ 계획시행시 투입장비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소음·진동	◦ 계획시행시 건설장비의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인근 정온 시설의 영향
		토양	◦ 계획시행시 장비가동·폐유저장소 설치에 따른 토양오염 발생
		악취	◦ 계획시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악취발생
		친환경적 자원순환	◦ 투입장비의 폐유발생으로 인한 주변 토양오염 우려 ◦ 작업인부 투입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인구 및 주거 산업		◦ 계획시행시 편입토지 발생
	위생·공중보건		◦ 계획시행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생·공중보건의 영향

나. 환경영향 저감대책

-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평가항목		저 감 방 안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이동로 및 주요분진발생 지역에 살수작업 실시, 세륜시설 운영 ○ 저소음·저진동의 공사공적을 수립, 공사차량 속도제한, 야간공사는 지양, 주요 번식기 피하여 공사 실시
	지형 및 생태축보전	지형·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성토에 의한 사면 안정대책으로 절·성토부의 법면 구배를 조정 ○ 비탈면 보호공법으로 식생보호공법 및 구조물 보호공법 적용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 지형·지질이나 기후조건, 기대효과에 대해 충분히 파악함과 동시에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한 사면녹화공법 선정 ○ 인공구조물 설치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계획
	수환경의 보전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사유출 저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사유출 방지망을 설치하여 토사유출 최대한 억제 -가배수로를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설치·운영 ○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자재 등이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덮개 처리 -강우시 콘크리트나 레미콘 타설작업을 금지하며 철근구조물 등이 빗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 급정지 등의 규제로 배기가스 발생량 최소화 -작업장내의 주기적인 살수 및 살수시설의 설치 운영 -차량 운행속도의 제한 : 20km/hr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 급정지 등의 규제로 온실가스 발생량 최소화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저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시간의 제한(08:00~18:00), 저소음·저진동 기계사용 -장비의 동시투입이나 집중투입을 지양하는 효율적인 투입방법을 고려 -가설방음판넬 설치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유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가동 전에 점검 실시 및 공사장비의 정비, 오일교환, 세척 등은 지정된 정비업소 등으로 유도
		약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취저감시설 운영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유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가동 전에 점검 실시 및 공사장비의 정비, 오일교환, 세척 등은 지정된 정비업소 등으로 유도할 계획 ○ 생활폐기물 및 분뇨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수거함 및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후 주기적으로 위탁처리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인구 및 주거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입용지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적절차에 따라 관계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후 처리
	위생·공중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피, 최소화, 조정, 감소 보상등 최적의 저감대책 수립